

경기도 공고 제 2024-5154 호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(영업정지)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종합건설업체 영업정지 사실을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 85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6 조의 3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 년 2 월 9 일

경 기 도 지 사

상 호 (대표자)	소 재 지	건설업종 (등록번호)	처분내용 (기간)	처분사유	처분근거
찬호종합건설 주식회사 (장택선)	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99번길 59, 303호(인창동, 살롬빌딩)	조경공사업 (10-5041)	영업정지 1개월 ('24.2.12.~ 3.11.)	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	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 82 조제 1 항 제 2 호